

제 273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2023.11.7.)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 목 차

1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경제기업과]	1
2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문화관광과]	5
3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0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13
5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소통과]	17
6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기업과]	20
7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23
8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나눔과]	26
9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10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33
11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정책과]	41
12	(재)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인구교육과]	44
13	(재)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	46
1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	48
15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0
1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경제기업과]	56
17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58
18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61



#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0. 11.

나. 발 의 자 :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11명)

(박수자, 이흥희,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김혜숙)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수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지역에서 생산된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구매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 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부

##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및 지역 먹을거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매촉진) ① 거창군수(이하 “군”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구매 목표 비율은 군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 안내

2. 지역업체 정보

3. 지역상품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군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표창)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거창 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해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10. 11.

나. 발 의 자 :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11명)

(김혜숙, 이흥희, 박수자,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이재운, 신미정)

다. 회부일자 : 2023. 10. 1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에는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가 있음에도 ‘어싱길’, ‘항노화힐링랜드’, ‘승강기 베스트 벨리’ 등 무분별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거창군이 국어기본법에서 규정된 책무를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한자어인 국어를 우리말로 변경

- 목적문 간소화(안 제1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중전 안 제2조, 제5조, 제13조)
- 행사, 사업명, 장소명 등 명칭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인용조문의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 7조)
- 불필요한 의무조항 개정(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2015년 7월 22일 시행된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약하고, 관련 법령 등 변경사항, 불필요한 조문 등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말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통해 거창의 우리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에 따른 우리말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 나. 거창군의회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은 우리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조례보다 우선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이 명칭, 정책명, 사업명, 장소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제5조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우리말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한글 사용 장려를 위한 어문규범 보급과 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거창 주민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가. 제안이유

- 국세·지방세 수입 저조 등 어려운 세입 여건과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확대함(안 제4조)
  - 1)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 ⇒ 90퍼센트 이내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정부의 세수감소로 재원이 줄어든 만큼 기존사업 투자 축소와 신규 사업의 전면적 투자계획 재조정, 진행중인 공사 지연 등이 우려되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한 타격을 줄일 필요성이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50퍼센트” 를 “90퍼센트” 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 1. 제안이유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법령 위임사항을 정함을 명시함(안 제1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기능 및 대행을 신설함(안 제7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신설함(안 제8조)
-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시 지원범위를 신설함(안 제9조)
-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를 신설함(안 제10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생활인구를 정의하고, 생활인구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 7. 10일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시행하는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 활용범위 확대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 강화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제9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제10조(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희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희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위원회의 심의사항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 1.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 등을 정비함(안 제3조·제6조·제10조)
  - 1) 위원 수: 7명 이내 ⇒ 10명 이내
  -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지명업무 담당과장
  - 3) 신설: 서면심의, 수당
- 다. 법령 중복·재기재사항 삭제함(현행 제10조·제11조)
  - 1) 보고, 현장조사 등
  - 2)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9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와 부위원장 변경, 법령 중복·재기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1조”를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로 한다.

제3조·제6조·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거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심의를 포함한다)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 1. 제안이유

- 한국승강기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한국승강기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등록금 지원 업무를 거창군 장학회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가 등록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조정순]

#### 1.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효도권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효도권 지원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지급방법 변경함(안 제7조의2)
- 나. 효도권 지원사업의 위탁근거 신설함(안 제7조의2)
- 다.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함(안 제10조)
  - 1) 현행: 월 10만원
  - 2) 변경: 월 15만원
- 라.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2제4항·제15조)
- 마. 별지 서식을 삭제함(안 제11조·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효도권 지급방식을 종이쿠폰에서 전자카드로 개선하고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게 1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자에게 효도권 이용자가 이용한 비용을 매월 지급한다.

④ 군수는 효도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나목 중 “월 10만원”을 “월 15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를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지급대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1.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군에서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영장례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공영장례 대상,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제4조)
  - 1)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2) 내용: 현금지급 원칙, 물품 예외지급, 매장비용은 제외
- 라. 공영장례 신청, 물품환수, 위탁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공영장례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장례 대상)**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공영장례(군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장례비용 지원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영장례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신청하려는 군민 또는 군 소재 법인은 공영장례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물품환수)**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품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받은 물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1. 제안이유

-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연회비 제도를 폐지하여 장난감은행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아이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창군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연회비 폐지 관련 삭제함(안 제8조·제9조)
  - 1) 연회비 납부 및 반환
  - 2) 연회비 면제
- 나. 법령 재기재 삭제함(안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장난감 은행 이용자에 대한 연회비(2만원)를 폐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9조,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1. 제안이유

- 거창군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기본계획, 사업, 아동권리 실태조사, 재정지원 등을 정함(안 제5조~제9조)
-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안 제10조~제18조)
- 라. 아동권리 대변인 설치·기능 등을 정함(안 제19조~제23조)
- 마. 아동동영향평가 실시, 실시 제외를 정함(안 제24조·제2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아동친화도시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아동 친화적 환경 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구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아동은 해당 아동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 의료, 문화 및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구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3.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
  - 나.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사업
  -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4.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
5.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등 조성)** 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한 제6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동권리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및 그 제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아동 분야의 전문가
  - 다.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 라. 군민인 아동의 부모 또는 모
  - 마.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권리 대변인의 설치)**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아동권리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0조(아동권리 대변인의 기능)** 아동권리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에 관한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
3. 아동 권리 침해 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아동권리 대변인을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 권리 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아동권리 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대변인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아동권리 대변인의 해촉)** 군수는 아동권리 대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대변인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권리 대변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2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수립하는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2.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군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외)** 군수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 및 단순 업무처리절차 등 조직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군수가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 1. 제안이유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정함(안 제2조)

나.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군민으로서 예방접종 금기자가 아니면서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등  
다.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

라.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을 정함(안 제5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를 정함(안 제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비용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만원까지 다양하고, 평균 14만원 정도로 다소 경제적 부담이 있는 선택 예방접종으로 현재 도내 8개 시군에서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군에서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거창군민
2. 예방접종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이나 제5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보건기관 등은 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5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거창군장학회 2023년도 출연 변경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 1. 제안이유

- 장학기금 확대 조성으로 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과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 변경 증액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3,229백만원(증 314백만원)  
- 2023년 출연예산 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출연기관명	2023년 편성액	출연금 변경(안)	증가액
(재)거창군 장학회	계	2,915	증 314
	장학기금 확대	2,250	
	장학사업	665	
	등록금 지원	0	증 314



- 사업내용
  -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2023년도 신입생 등록금 지원(증 314백만원)

나. 증액 부서의견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소멸위기에 대응
- 지역 대학으로 신입생 유치 및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금 지원 정책 필요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한국승강기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 업무를 거창군 장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 2023년도 출연금을 증액(314백만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국승강기대학교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거창군장학회 2024년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조호경]

1. 제안이유

- 장학기금 확대 조성으로 장학회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과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출연금 증액 지원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3,695백만원(증 466백만원)  
- 2024년 출연예산 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출연기관명		2023년 편성액	2024년 요구(안)	증가액
(재)거창군 장학회	계	3,229	3,695	증 466
	장학기금 확대	2,250	2,250	
	장학사업	665	665	
	등록금 지원	314	780	증 466

○ 사업내용

-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2,2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665백만원)
- 한국승강기대학교 2024년도 등록금 지원(780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 : (23년) 신입생 → (24년) 전교생

나. 증액 부서의견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소멸위기에 대응
- 지역 대학으로 신입생 유치 및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금 지원 정책 필요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2024년부터 한국승강기대학교 등록금 지원 사업 대상이 신입생에서 전교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연금을 2023년 대비 466백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승강기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신입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 1. 제안이유

-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쟁송사무 지원,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기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백재현)
-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나. 출연금액 : 4,769천원

○ 2024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출연금	4,172	4,769	4,769	0	0	4,769	

※ 산출기초 : '22년 결산 보통세 39,743,750천원 × 1.2/10,000

다.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등을 위해서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동복]

####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가. 제안이유

- 거창군 청년실태조사(2022.3.) 결과 청년 정착을 위해 ‘일자리·주거·문화’가 3대 핵심 요소로 도출되어,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건립, 청년사이를 통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으로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청년 거점 센터 구축 필요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실사용자 청년 의견을 반영한 부지 선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을 진행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취득개요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5-1
- 사 업 명 :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활력공작소) 건립
-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 업 비 : 8,000백만원(사업비 6,000, 부지매입비 2,000)
- 사업내용 : 청년창업지원센터(청년활력공작소) 신축
  - 지상 4층, 연면적 A=1,400m<sup>2</sup>
  - 창업공간, 학습(취업)공간, 문화여가공간, 사무실 및 정보제공공간

### 2) 취득재산 세부내역 : 토지 1필지 803m<sup>2</sup>, 건물 1개동 804.5m<sup>2</sup>

- 토지 : 1필지 803m<sup>2</sup> (단위 : m<sup>2</sup>, 원)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공시지가	기준가격	비고
취득	상림리 145-1	대	803	803	1,125,000	903,375,000	

- 건물 : 1개동 804.5m<sup>2</sup> (단위 : m<sup>2</sup>, 원)

구분	소재지	연면적	층수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가격	비고
취득	상림리 145-1	804.5	2	175,428,810	175,428,810	

### 3) 추진경과

- 2022. 6. ~ 11.: 타 지자체 사례조사(김제, 군산, 순천, 흥성, 청양, 남원 등)
- 2022. 7. ~ 11.: 창업지원센터 건립 관련 보고(7월, 9월, 11월)
- 2022. 9. ~ 10.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관련 청년 의견 수렴
- 2023. 1. : 거창대학 관계자 업무 협의(창업 관련 연계 협력)
- 2023. 3. : 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기획 업무 용역 시행
- 2023. 3.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축 및 운영 관련 벤치마킹(아산)
- 2023. 3. : 청년 심층 인터뷰
- 2023. 4. : 청년 창업·문화주거 수요조사, 청년디자인단 간담회
- 2023. 5. : 청년디자인단 및 청년활동가 벤치마킹

- 2023. 6. :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대상지 청년 제안 및 협의
- 2023. 6. : 거창군의회 주례회의 보고
- 2023. 6.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신청

#### 4) 향후계획

- 2023. 11. : 2024년 본예산 사업 대상 부지 매입비 편성
- 2023. 12. ~ 2. : 공공건축 사전 절차 이행
- 2024. 2. : 보상 협의 및 토지 매입
- 2024. 3. : 청년창업지원센터 설계 공모 추진
- 2024. 6.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2026. 2. : 준공 및 개관

#### 5) 기대효과

- 청년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살이 특화 프로그램, 도농 간 어울림 공간조성으로 청년 인구 유입
- 거창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농업인의 협업모델 개발로 지역특화와 농촌 재생, 청년 자립 실현

#### 다.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② 김천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부지 매입

### 가. 제안이유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고령화, 노후 건축물 등 지역쇠퇴가 심한 지역으로 도시활력 회복이 필요한 지역임
- 지역맞춤형의 로컬 공간 콘텐츠 조성



## 나. 주요내용

### 1) 취득개요

- 사업명 : 김천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4. ~ 2027.(4년간)
- 주요내용 : 김천지구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 사업비 : 8,100백만원(토지매입 1,400백만원)

지 번	면적(m <sup>2</sup> )	지목	용도지역	공시지가(원)	평가금액(천원)	비고
계	2,103				1,335,405	
거창읍 김천리 213-7	1,683	임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8,600	1,068,705	수수료, 지장물 포함
거창읍 김천리 213-34	185			127,400	117,475	
거창읍 김천리 213-35	235			175,800	149,225	

※ 평가금액 : 2022년 도시계획도로 편입 시 감정평가금액 적용 m<sup>2</sup>당 635,000원

### 2) 추진경과

- 2023. 1. ~ 3. : 어울림센터 건립 위치 선정(주민의견)
- 2023. 3. : 토지소유자와 협의
- 2023. 4. : 공모사업 신청

### 3) 향후계획

- 2024. 1. ~ 3. : 토지매입추진(감정평가 등)
- 2024. 4. :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 4) 기대효과

- 마을 자원을 활용한 활력 넘치는 골목길 조성과 전 세대가 함께하는 주민 소통 공간 확보 및 도시 활성화 기반 마련

## 다.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①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은

- 거창군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과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청년실태조사(2021.12.~2022.3.)를 실시 한 결과 청년으로서 불편함을 느끼는 1순위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음.
- 이에, 청년 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

#### ② 김천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부지 매입 건은

- 김천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쇠빛마을 리본(Re:born)프로젝트’라는 주제로 2020년 12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 주요내용으로는 태양광 설치, 거점공간 조성, 주민참여 디자인, 안심골목길 조성, 노후 주택 정비, 거창대화로 조성, 역사 문화로 조성 등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임.
- 어울림센터는 주민들의 정보 공유 장소이자 마을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곳으로 마을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공모사업 선정 후 신축과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 1. 제안이유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신용보증 재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 사 업 비 : 450,000천원(군비)
  - 2024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비 고
2024년	400	450	증 50

-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나. 부서 의견

-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대비 5천 만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수요 변화, 경남도내 타 시·군 출연금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와 경기 침체,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며
-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출연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가북면 동촌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 1. 제안이유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환경훼손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 업 자 : (주)동촌마을신재생에너지 대표 정규호
- 사업기간 : 2023. 10. ~ 12. / 3개월간
- 발전용량 : 19.5kW(발전량 25,127kWh/y, 수익금 5,800천원정도/y)

- 사업비 : 44,000천원(군 39,600 자부담 4,400)
- 사업유형 :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 중 주민수익형

#### 나. 추진사항

- 2023. 9. 11.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의(동촌마을→가북면)
- 2023. 9. 12. : 설치 건의서 진달(가북면→경제기업과)
- 2023. 9. 14. : 검토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주민수익형 분야)으로 설치 가능’ 회신(경제기업과→가북면)

#### 다. 재산의 표시

위 치	면적 (㎡)	설치 (㎡)	설치용량 (kW)	사용허가신청자	비고
가북면 중촌리 1951, 1952 (토지 위)	394	90	19.5	(주)동촌마을신재생에너지 대표 정규호	

#### 라. 향후 추진 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북면) : 군의회 동의 이후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 허가조건 : 사용료 부과 및 자진 철거
  - 연간 사용료 : 재산평가액(공시지가×부지면적×요율5%)×1.1(부가세)
- 태양광 발전시설 축조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일 ~ 2023. 1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수익금을 활용한 마을 복지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바가 크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7.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 10. 11.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3. 10.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3. 10. 26.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옥진숙]

### 1.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재)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1,260,212천원
  - 2024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4년	1,154,610	1,260,212	1,260,212	-	-	1,260,212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6명, 기간제 5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나. 부서 의견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 이후 운영 8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거창국제연극제, 한마당대축제 등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혜진]**

- 문화예술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창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나,
- 정책사업의 전달 및 집행, 시설관리, 위탁사업 추진, 문화행사 등 단순 역할을 넘어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적실성 높은 문화정책을 개발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